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RC-2) 외국인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민영주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사항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화 상담 운영

-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RC-2) 분양전환아파트는 '보여주는 집'을 대신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songdorc2rc4.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 ☎ 1811-9577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시, 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시간,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일정 외에는 홍보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 및 각 세대 방문은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함 / 특히,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등의 방문은 제한될 수 있음.)

■ 당첨자의 홍보관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준수 사항(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세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37.3도가 넘을 경우 입장 제한)
-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등 감염 예방 수칙 적극 협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안내

- 이 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이며, 2016년 8월 준공 이후 공실이었던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분양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 받았으며, 준공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분양전환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마루,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노후화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0.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2.28.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조건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자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28.)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 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이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에 필요한 입주자지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추첨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천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mcd.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안내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 계약체결 |
|----|---|---|---|-------------------------|-----------------------------------|
| 일정 | 03월 09일(월) | 03월 10일(화) | 03월 16일(월) | 03월 17일(화) ~ 03월 19일(목) | 03월 30일(월) ~ 04월 01일(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별도 통보 | 홍보관 방문 (10:00 ~ 16:00) |
|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각 당첨 세대 | 홍보관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S동 502호)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스토어 어플은 이용 불가)
-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83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1808호(2020.2.7.)로 분양전환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84번길 24(송도동 191-4번지),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 208동
- 공급규모 : 아파트 1개동(208동) 지하 1층~지상 32층, 일반공급 118세대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잔금납부기한은 2020.05.29.까지임)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
| 민영 주택 | 2020000231 | 01 | 105.9190A | 105A | 105.9190 | 37.3130 | 143.2320 | 55.1570 | 198.3890 | 71.6480 | 58 | 58 | 2 |
| | | 02 | 105.8980B | 105B | 105.8980 | 37.7640 | 143.6620 | 55.1680 | 198.8300 | 71.6338 | 60 | 60 | 2 |
| 합 계 | | | | | | | | | | | 118 | 118 | 4 |

-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카다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세대별 세부면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주택형 | 타입 (동, 라인) | 공급 세대수 | 층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계약체결일) | 잔금(90%) (2020.5.29.까지)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 |
| 105.9190 A | 105A (208동, 2호라인) | 28 | 2층 | 1 | 318,434,000 | 270,710,000 | 27,071,000 | 616,215,000 | 61,621,500 | 554,593,500 |
| | | | 3층 | 1 | 325,214,000 | 276,480,000 | 27,648,000 | 629,342,000 | 62,934,200 | 566,407,800 |
| | | | 4층 | 1 | 328,704,000 | 279,440,000 | 27,944,000 | 636,088,000 | 63,608,800 | 572,479,200 |
| | | | 5~10층 | 6 | 332,164,000 | 282,380,000 | 28,238,000 | 642,782,000 | 64,278,200 | 578,503,800 |
| | | | 11~16층 | 5 | 338,784,000 | 288,010,000 | 28,801,000 | 655,595,000 | 65,559,500 | 590,035,500 |
| | | | 17~24층 | 7 | 342,244,000 | 290,950,000 | 29,095,000 | 662,289,000 | 66,228,900 | 596,060,100 |
| | | | 25~31층 | 7 | 345,534,000 | 293,760,000 | 29,376,000 | 668,670,000 | 66,867,000 | 601,803,000 |
| 105.8980 B | 105B (208동, 1호라인) | 31 | 2층 | 1 | 315,244,000 | 268,000,000 | 26,800,000 | 610,044,000 | 61,004,400 | 549,039,600 |
| | | | 3층 | 1 | 322,004,000 | 273,740,000 | 27,374,000 | 623,118,000 | 62,311,800 | 560,806,200 |
| | | | 4층 | 1 | 325,484,000 | 276,710,000 | 27,671,000 | 629,865,000 | 62,986,500 | 566,878,500 |
| | | | 5~10층 | 6 | 328,644,000 | 279,400,000 | 27,940,000 | 635,984,000 | 63,598,400 | 572,385,600 |
| | | | 11~16층 | 6 | 335,564,000 | 285,280,000 | 28,528,000 | 649,372,000 | 64,937,200 | 584,434,800 |
| | | | 17~24층 | 8 | 338,724,000 | 287,970,000 | 28,797,000 | 655,491,000 | 65,549,100 | 589,941,900 |
| | | | 25~32층 | 8 | 342,184,000 | 290,910,000 | 29,091,000 | 662,185,000 | 66,218,500 | 595,966,500 |
| 105.9190 A | 105A (208동, 4호라인) | 30 | 2층 | 1 | 315,294,000 | 268,050,000 | 26,805,000 | 610,149,000 | 61,014,900 | 549,134,100 |
| | | | 3층 | 1 | 322,084,000 | 273,810,000 | 27,381,000 | 623,275,000 | 62,327,500 | 560,947,500 |
| | | | 4층 | 1 | 325,564,000 | 276,780,000 | 27,678,000 | 630,022,000 | 63,002,200 | 567,019,800 |
| | | | 5~10층 | 6 | 328,704,000 | 279,440,000 | 27,944,000 | 636,088,000 | 63,608,800 | 572,479,200 |
| | | | 11~16층 | 6 | 335,644,000 | 285,350,000 | 28,535,000 | 649,529,000 | 64,952,900 | 584,576,100 |
| | | | 17~24층 | 8 | 338,784,000 | 288,010,000 | 28,801,000 | 655,595,000 | 65,559,500 | 590,035,500 |
| | | | 25~31층 | 7 | 342,244,000 | 290,950,000 | 29,095,000 | 662,289,000 | 66,228,900 | 596,060,100 |
| 105.8980 B | 105B (208동, 3호라인) | 29 | 2층 | 1 | 318,354,000 | 270,640,000 | 27,064,000 | 616,058,000 | 61,605,800 | 554,452,200 |
| | | | 3층 | 1 | 325,164,000 | 276,430,000 | 27,643,000 | 629,237,000 | 62,923,700 | 566,313,300 |
| | | | 4층 | 1 | 328,644,000 | 279,400,000 | 27,940,000 | 635,984,000 | 63,598,400 | 572,385,600 |
| | | | 5~10층 | 6 | 332,104,000 | 282,340,000 | 28,234,000 | 642,678,000 | 64,267,800 | 578,410,200 |
| | | | 11~16층 | 5 | 338,724,000 | 287,970,000 | 28,797,000 | 655,491,000 | 65,549,100 | 589,941,900 |
| | | | 17~24층 | 8 | 342,184,000 | 290,910,000 | 29,091,000 | 662,185,000 | 66,218,500 | 595,966,500 |
| | | | 25~31층 | 7 | 345,484,000 | 293,710,000 | 29,371,000 | 668,565,000 | 66,856,500 | 601,708,500 |

※ 공급금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금액은 2016년 8월 준공 후 공실로 유지된 주택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세대별 향, 층, 시설물의 노후화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음.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거전용면적인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이 주택의 홍보관(1811-9577)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당해 공고문 '8.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신청 유의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자격요건 |
|------|---------------|-----|----------------|---|
| 민영주택 | 인천광역시/ 수도권 | 1순위 | 전용면적 85㎡ 초과 |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 | 2순위 | 전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 구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그밖의 시,군(기타 수도권) |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함.)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입주자 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기준 금액 이상 충족해야 함.
- ② 청약저축 가입자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4. 청약 신청방법

■ 신청일정 및 방법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3.09. (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2순위 | 2020.03.10. (화) 08:00~17:30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스토어 어플은 이용 불가)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하오니, 반드시 방문 전 해당 지점의 영업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감정원(주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익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은행창구 방문접수 시(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반드시 해당 지점의 영업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구비사항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7일)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 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mcd.c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홍보관(1811-9577)에 전화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으로 인해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6. 당첨자 발표

■ 일정

| 구분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대상 세대 개방 | 당첨자 서류제출(자격 검증) 기간 | 계약체결 |
|------------------|--|--|--|--|
| 일반공급 (1,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3.16(월) 확인방법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3.17.(화)~2020.3.19.(목) 방법 등은 당첨자발표 이후, 별도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3.20.(금) ~ 2020.3.25.(수) (10:00~16:00) 대상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장소 : 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 502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0.3.30.(월)~2020.4.1.(수) (10:00~16:00) 장소 : 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 502호)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이용 불가)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
| 이용기간 | | 2020.3.16.(월) ~ 2020.3.25.(수)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이용 불가)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3.16.(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일반공급) 및 예비당첨자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추후 지정하는 장소로 제출해야 함.

| 구분 | 내용 |
|-------|---|
| 제출기간 | 2020. 3. 20.(금) ~ 2020. 3. 25.(수) (10:00~16:00) |
| 제출대상자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 제출장소 | 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 502호)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 제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계약체결 시 장시간 소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접수 건수의 과다로 인한 검증일정 및 운영시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합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시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구비 서류

- 당첨자(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추후 지정하는 장소로 제출해야 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기본 서류 | ○ | | 주택 상태 확인서 | - | 당첨 세대 방문(상태 확인) 후, 현재 상태로 계약체결 한다는 확인 서류(홍보관에 비치) |
| |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분양대금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 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 | ○ |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증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사실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 |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경우(홍보관에 비치) |

| | | | | |
|--|---|------------------------------|-----|--|
| 일반공급 추가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 |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을 경우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서류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 는 서류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 - | 전산검색결과 주택 소유로 판명 시 사업 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 하는 서류 | - |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 | ○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기재하여 발급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서만 계약이 가능함. |
| | ○ |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홍보관에 비치) |
| | ○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8. 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 체결 기간 및 장소

| 구분 | 기간 | 장소 |
|-------------------------|---|--|
|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 1, 2순위) | 2020.3.30.(월)~2020.4.1.(수) (10:00~16:00), 3일간 | 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 502호)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 당첨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 유·무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40-012-957429 | 인천도시공사 | (필수사항) 입금시, 보내는 사람의 당첨자 이름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아래 참조)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함(계약 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은 분양대금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은 계약 시 반드시 제출 (입금예시: 208동 203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은 “0203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입금)
- 공급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인천도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입금예시: 208동 203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은 “0203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입금)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인천도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우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해당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고, 반환에 따른 이자는 없음. (반환 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분양대금의 납부기한은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2020.05.29.(금)까지 입니다.
- 잔금은 2020.05.29.(금) 이전에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이 가능하며, 선납한 금액을 선납일수에 따라 선납할인율(연 2.5%)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잔금을 2020.05.29.(금)까지 미납할 경우, 연체한 것으로 보며 연체료는 연체된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율(연6.5%)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 시(키볼출 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선수관리비)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신청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준함.

9. 기타 유의사항

- 이 주택은 2016년 8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및 단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 공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할 경우 입주일부터,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납부약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미종결된 하자(5년차 이후)는 수분양자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이전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입니다.
- 일반 분양세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11.14.) 시 작성된 내용이며, 현재 운영사항은 세대방문 시 직접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외국인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 상태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모든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마루, 단열, 도장,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배관 및 소화설비, 기타마감재 등]의 노후화 및 작동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2016년 8월에 준공된 주택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이행증권은 이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2년, 3년차 하자담보책임 종료)
- 5년,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인천도시공사가 아닌, 이 주택의 최초 사업시행자 등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은 잔금납부일 이후 매수인에게 이관됩니다.
- 잔금납부일 이후 세대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입주 후 시설물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는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계약 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임대주택으로 보유했던 주택이며, 분양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호 | 인천도시공사 | (주) 대우건설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 법인등록번호 | 124771-0001551 | 110111-2137895 |

- 공급안내 홈페이지: www.songdorc2rc4.com
 - 홍보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S동 502호
 - 분양 문의: ☎ 1811-9577
-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105A 58세대 / 105B 60세대
총 1,406세대 중 외국인임대 118세대 분양전환

